

---

# 國際 海洋法上의 漁業 管理 制度에 관한 연구

李 奉 雨\*

A Study on a Fisheries Management system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ng-Woo Lee\*

## 요 약

1982년 제 3차 유엔 海洋法 會議에서 國際 海洋法 協約이 締結되고 1996년에 이르러 이 協約이 施行되게 되었다. 바다의 憲法인 이 協約에는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 高度 回遊性 魚族, 溪河性 魚族, 大陸棚 資源, 公海漁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논점 특히 排他的 經濟水域과 公海漁業에 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 Abs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adopted by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and it came in to force on November 1996.

It involves exclusive economic zone, highly migrated species, marine mammals, anadromous stocks and high seas.

in this paper, I analyze these issues, especially EEZ and high seas.

## I. 서 론

第 2次 世界大戰 後의 海洋秩序는 從來의 넓은 公海와 漁業의 自由로부터 漁業水域의 設定, 나아가 200해리라고 하는 廣範위한 海域을 分割하여 支

配하는 沿岸國의 管轄權의 擴大를 위한 歷史였다.

200해리 經濟水域 내지 漁業管理水域 設定의 움직임에는 3가지의 크나큰 潮流가 있었다.

첫째로 多國家間 漁業條約을 중심으로 하는 國際的 漁業管理의 失敗가 200해리 體制의 移行으로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연구소  
접수일자 : 1998년 1월 7일

의 크나큰 방아쇠가 되었다. 資源保存을 위한 多國家間의 共同 規制措置에 관한 關係國의 合意를 얻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規制措置의 實施가 늦어짐으로 國제적 어업관리가 실패하였던 것은 否定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南北問題의 一環인 開發途上國의 資源自國主義(資源Nationalism)이다. 開發途上國은 公海自由의 原則이 결국 小數의 漁業先進國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認識하에서 南北의 經濟差異를 縮小하는 手段으로서 資源領有와 排他的 管理權을 主張한 것이다. 결국 廣域的인 地先資源을 排他的 管轄權下에 두어 自國漁業의 占有的 利用을 圖謀하고 혹은 國家收入의 資源으로 하고자 하는 開發途上國의 資源自國主義(資源Nationalism)에 그 根源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漁業先進國, 漁業後進國間의 利害對立에서 오는 沿岸國의 資源配分의 要구이다. 漁業後進國은 自國의 近海海域의 水產資源을 충분히 利用할 能力이 없을 뿐만 아니라 漁業先進國과의 競爭에 맞설 수 없다. 특히 沿岸性漁業者는 外國의 能率의 漁業이 地先近海에서 操業하는 것에 대하여 漁場競合, 資源의 掠奪의 念慮에서 外國의 能率의 漁業을 拒否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自國의 近海資源이 他國에 의해 荒廢化 할 염려와 近海資源의 利用에 의한 利益을 先進漁業國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초조감이 배경으로 된 것이다. 특히 後進的인 沿近海漁業이 支配的인 先進國 '미국'과 '캐나다'가 外國漁業의 排除라고 하는 漁業者의 소리에 눌려 200해리 體制로 斷行한 것이 決定的因素을 達成한 것이다.

제 3차 國제 海洋法會議의 論議는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긴 時間 難航을 거듭하였다. 1976년 제네바 회의에서 앞으로의 交涉을 促進하기 위한 單一草案이 提出되고 그것을 骨子로 하여 論議가 거듭되어 겨우 1982년에 이르러 海洋法에 關한 國際聯合條約이 結實을 보게 되었다. 이 條約은 당초 117개국이 署名하였으며 UN海洋법協約에 따르면 「이 協約은 60번째의 批准書 또는 加入書가 寄託된 날로부터 12개월 後에 效力を 발생한다.」고 되어있다(第 308條 1項).

가이아나(Guiana)가 1993년 11월에 60번째의 批

准書를 寄託하였기 때문에 同條約은 1994년 11월에 發效하였다. 이미 85개국이 본 條約을 締結하였으며 (1996. 2월 1일 현재) 장기간 論議 되어왔던 海洋의 新秩序는 이른바 바다의 憲法으로서 世界的인 體制로서 確立되게 되었다. 이른바 「海洋의 自由」에서 「海洋의 分割」의 時代를 맞게 되었다.

新 國際海洋法 條約中 漁業에 關한 부분 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하기로 한다.

## II. 본 론

### 1. 排他的 經濟水域

이 條約의 가장 큰 特色은 領海의 幅員을 12해리 이내로 하고 領海의 基線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設定한 것에 있다. 따라서 領海의 幅을 12해리로 하면 排他的 經濟水域의 幅은 최대한 188해리이다.

| 기선 |    |      |              |       |
|----|----|------|--------------|-------|
| 영토 | 내수 | 영해   | 배타적 경제 수역    | 공해    |
|    |    | 12해리 | 24해리<br>접속수역 | 200해리 |

그림1 기선을 경계로 한 수역 표시

200해리 ( $1852m \times 200 = 370.4km$ ) 概念의 始初는 1946년 南美國家들의 實行에서 비롯된다. 1945년 美國의 트루먼 대통령이 大陸棚 관계를 宣言하였으나 太平洋沿岸에는 大陸棚이 없기 때문에 이 地域의 必須資源을 獨占하려는 뜻에서 200해리 漁業水域을 主張하였던 것이다.

200해리의 根據는 남미 태평양을 연하여 北向하는 흥볼트 해류의 幅이 200해리로서 여기에는 龐大한 量의 水產資源이 分布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 水域이 普遍化되면 海洋의 약 36%가 이 水域에編入되고 그렇게 되면 商業性이 있는 全魚族의 90%이상이 그리고, 海底 賦存石油資源의 약 87%가 이 制度下에 들어가게 된다.

排他的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은 資源에 關하여는 部分的으로 領海와 같은 性質을 가지면서도 航海問題에 있어서는 公海와 비슷한 그야말로 領海

도 公海도 아닌 第3의 海域의 性格을 지닌다.

排他的經濟水域의 核心은 沿岸國이 水域內의 天然資源(生物資源 및 非生物資源)에 대하여 探查, 開發, 保存 및 管理를 위한 主權의 權利(sovereign rights)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第 56條).

이것을 漁業資源의 側面에서 말하면 沿岸國이 排他的經濟水域에 있는 漁業資源을 探查 또는 開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他國은 沿岸國의 同意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探查 또는 開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資源의 保全과 管理에 대하여도 他國 또는 國際機關의 關與를 排除하고 오로지 沿岸國의 判斷에서 이것을 行한다는 意味이다. 이것은 결국 傳統 漁業國의 종래의 慣習이나 實績主義을 排除하려는데 그 核心이 있다.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漁業管理의 原則을 要約하면 첫째로 管理의 目標는 原則적으로 MSY의 達成에 두고 있으며, 水產資源의 利用은 沿岸國이 優先하지만 沿岸國이 漁獲 할 수 없는 剩餘分은 外國에 漁獲시킨다고 하는 剩餘原則을 確立한 점에 있다. 外國에 漁獲시킬 때에는 入漁料의 支拂, 操業上의 條件 外에 經濟協力 技術協力 등의 條件을 賦課하는 것이 可能하다. 이것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의 手段으로서 排他的 經濟水域의 水產資源을 利用시키는 경우의 經濟的代價를 獲得하려는 意圖를反映한 것이다(第 61條, 62條).

## 2. 高度回遊性魚種의 管理

가다랭이, 다향어, 고래와 같은 高度回遊性魚種은 國가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넘어 廣範圍 回遊하기 때문에 본래 각 國가 자체의 管轄權에 맡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多國家間의 國際條約에 의한 資源의 管理와 關係國에 의한 資源management에 대하여 상호 관連된 國가간의 協力を 明文化하였다(第 64條). 即 高度回遊性魚族 資源의 回遊域인 沿岸國과 漁獲을 行하는 國家가 모두 參加하는 國際機關에 의해 保存管理 할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 海洋法의 基準은 高度 回遊性 魚種에 대하여 排他的인 經濟水域內에서의 沿岸國에 의한 管理를 否定한 것은 아니다.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資源을 自國의 것이라고 하는 一方의 인主

張으로 一部의 國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國가는 高度回遊性魚種을 사실상 自國의 200해리 漁業權管轄下에 두고 있다.

## 3. 潮河性魚種의 管理

潮河性 資源의 母川國은 그 資源에 대하여 第 1 차적인 利益과 責任을 가진다. 潮河性 資源의 漁業은 원칙적으로 排他的 經濟水域내에서 行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他國에 의한 漁業이 行하여지고 있는 경우는 關係國과 母川國이 協議하고 이 경우 母川國은 漁業國의 經濟的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에 協力하고 漁業國이 資源의 增殖經費를 負擔할 때에는 特別한 考慮를 하는 등 母川國과 漁業國과의 調整을 도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第 66條).

## 4. 大陸棚 資源의 管理

大陸棚資源에 대하여, 沿岸國은 大陸棚을 探查하고 그 天然資源을 開發할 수 있기 때문에 大陸棚에 대하여 主權의 權利를 行使한다.

이 天然資源은 鑛物 기타 非生物的 資源 및 定着性이 있는 種族에 속하는 生物資源이다(第 68條).

## 5. 公海內에서의 漁業

公海(領海, 排他的 經濟水域등 以外의 水域)에서는 公海自由의 原則이 있어 그 中에는 漁業의 自由도 包含된다. 公海漁業에 관하여 모든 國家는 公海에서의 生物資源의 保存管理에 대하여 相互協力한다(第 117條). 複數의 國家가 同一資源을 利用하고 혹은 同一水域에서 操業하고 있을 때에는 生物資源의 保存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에 대하여 交涉을 行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同國家들은 小地域의 또는 地域의 漁業機關을 設定하는데 相互協力하여야 한다(第 118條). 모든 國가는 生物資源의 漁獲可能量 및 其他의 保存措置의 設定에 있어서 다음의 事項을 行하여야 한다(第 119條).

### 1. 環境上, 經濟上의 關聯要因을 勘察하고 漁獲의 態樣, 資源間의 相互 依存 關係, 勸告 된 國際

- 的 最低基準을 고려하여 MSY가 實現 될 수 있는 水準으로 資源量을 유지할 것.
- 2. 漁獲되는 魚種과 相互關聯하는 他의 魚種의 再生產에의 影響을 고려할 것
  - 3. 科學的情報, 漁獲量, 漁獲努力量에 관한 統計등의 資料를 提供하고 交渉할 것.
  - 4. 保存措置의 實施는 어떠한 나라에 대하여도 差別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결국 公海의 操業은 MSY의 實現을 目標로 한 國際的 資源管理下에 두려고 하는 體制와 資料의 公開와 保存 價值의 無差別 原則이 適用되고 複數 魚種 管理가 提唱되고 있다.

### III. 결 론

公海漁業에 관하여 漁業國과 沿岸國간에 의견이 對立하고 있었던 200해리 漁業水域과 隣接된 公海上에 걸쳐 分布하는 魚種의 資源(straddling stock) 및 高度回遊性 魚種(가다랭이, 참치)의 保存管理와 利用에 관하여 國聯會議가 수차례 걸쳐 개최된 결과 1995년 8월에 「straddling stock 및 高度回遊性魚種에 관한 國聯協定」이 채택되었다.

이 協定에는 이들 資源의 保存管理措置는 200해리 水域內와 그에 隣接하는 公海와의 사이에서 一貫性을 確保할 것. 公海에서의 操業은 地域漁業 management機關에 加盟하든가 혹은 그措置의 適用에 合意하지 않는 한 認定하지 않을 것. 地域漁業 management機關의 加盟國은 當該機關의 保存management措置가 適用되는 水域에서 操業하는 他國의 漁船에 乘船, 檢查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에 의해 公海에 있어서 이들 資源의 保存management에 대하여 地域漁業 management機關을 통한 保存management措置의 協力を 기반으로 한 沿岸國 및 漁業國이 遂行해야 할 義務가 國際的으로 明確히 規定되게 되었다. 國際捕鯨委員會(IWC)에서는 일본이나 노르웨이는 科學的根據에 의한 鯨類資源의 持續的 利用의 필요성을 主張하고 있으나 食用으로서 보다는 고래의 審美的內지 觀光資源으로서 觀鯨을 중시하는 歐美諸國을 중심으로 하는 反捕鯨國에 의해 鯨類資源의 모라토리움은 계속되고 있다.

日本이 1996년 7월 20일 EEZ를 宣布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년 8월 8일 EEZ를 선포하였고 96년 5월 15일 中國도 EEZ宣布方針을 發表하는 등 韓·中·日간에 EEZ宣布가 可視化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水產業構造는 새로운 海洋秩序에 適應할 漁業管理制度를 시급히 確立 할 것이 要請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박춘호, 유병화 : 해양법, 민음사, 1986.
- [2] 유병화 : 국제법 II, 진성사, 1995.
- [3] 이병조, 이중범 :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0.
- [4] 高林秀雄 : 先進國が 主導する 200海里, economist, 55-6.
- [5] 川上健三 : 海洋法과 漁業制度의 行方, 月刊貿易と産業.
- [6] 川上健三 : 漁業資源と海洋法, 國際問題 283.
- [7] 1992 FAO Marine Fisheries and the law of sea : A decade of change FAO Agriculture series No.25
- [8] 1994 Mike Holden : The common Fisheries Policy, Fishing News Books
- [9] 1993 Marine Fisheries and law of the Sea : A Decade of change. FAO Fisheries circular No.853. FAO. Rome.
- [10] 1992 Copes. Parjival. Fisheries Management in Canad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Fisheries Management.



이 봉 우(Bong Woo Lee)

1963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85년 :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

수산경영학과 경제학

석사

1993년 :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

수산경영학과 경영학박사

1998년 : 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교수

전공분야 : 수산업법, 해양법